
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사기미수·조세범
처벌법위반·의료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·고용보험법위반·국민기초생
활보장법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이자제한법위반·국가기술자격법위반

[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. 4. 17. 2013고합236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사】 최수은(기소), 이승현(공판)

【변호인】 변호사 신성욱 외 2인

【주문】

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.

다만,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3(대판:피고인)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기술자격법위반의 점은 무죄.

【이유】

【이유】

【이유】

【이유】

【이유】

【이유】